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69호]

2025년 화성산업진흥원-수원대학교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예비창업자 · 스타트업 모집 공고

수원대학교 WoW! Makers와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우수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 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유의사항

본 공고는 수원대학교 와우메이커스 내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참조7] 수원대학교 장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5. 4.~12.
- 사업대상: 예비 창업자 및 화성시 소재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사업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 및 예비창업자 중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드웨어기반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가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및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지원사항: 시제품 제작 개발비용(재료비) 기업당 최대 5,000천원 (공급가액) 지원
- 지원방식: 협약체결에 따른 100% 선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조건)

□ 지원항목

비목 (지원항목)	운영기관	세부내용
재료비	화성산업 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위탁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시제품 제작)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외주계획서 必)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회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정산 수수료
시제품 설계 컨설팅 (멘토링)	수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외형/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기술지원 • 사업화를 위한 사업분야별 전문가 1:1 매칭 ※ 멘토링은 WoW! Makers 전문가 list에 속한 전문가와 1:1 매칭 예정
시제품 제작 (장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 가공 지원 ※ 시제품 컨설팅 및 제작과정에 필요한 제품 제작 장비를 지원(별첨 참고)

※ 기 양산 및 판매 제품 지원 불가

※ 비목에 대한 계상기준 및 필요 증빙자료는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추진일정

구 분	주 요 활 동	일 정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모집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4~5월
▼		
* 평가 및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서류 발표평가	5~6월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보완 내역 확인 후 진흥원-선정기업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6~7월
▼		
* 멘토링 및 제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대) 구현방안 및 기술 검토 멘토링 진행 - (선정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발 	7~10월
▼		
* 정산 및 성과물 관리 * 사업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검토 및 보고 	11월
▼		
* 성과공유회 개최	-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제품 전시 (수원대 예산지원시 개최)	12월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개요

- 모집규모: 10개사 이내
- 접수기간: 2025. 4. 7.(월) 9시 ~ 2025. 5. 7.(수) 14시까지
- 지원자격

① 예비창업자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등록 필수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단, 사업 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을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창업자

- 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구분	자격 세부내용								
공통기준	<p>접수일(25.4.7.)로부터 업력 3년 이내(22.4.7.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div> <p>※ 근거: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p>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td> <td></td> </tr> <tr> <td>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td> </tr> <tr> <td>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td> </tr> <tr> <td>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td> </tr> </table>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 신청방법: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 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참여신청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 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

◆ 제출서류 목록

● 필수제출 서류 : 적색(*)표시 ● 해당 시 제출 서류 : 검은색표시

제출항목	비고	업로드 단계 <단계 신청정보 입력>
<p>● 신청서식 [제1, 2, 3]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제1호] 사업 신청서 └ ● [제2호] 사업 계획서 └ ● [제3호] 사업비 사용계획서 	PDF 형식	「제출서류 업로드」
<p>●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p> <p>※ 예비창업자: [별첨2] 예비창업자 협약서 1부 제출</p>		
<p>● 국세 완납 증명서 1부</p> <p>※ 예비창업자: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1부</p>		
<p>●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p> <p>※ 예비창업자: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p>		
<p>● 설계도면 1부</p>	<p>1) 2D파일 - dwg / dxf</p> <p>2) 3D파일 - stp / iges / stl</p>	
<p>●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1부</p> <p>※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대체 가능</p>	<p>창업기업확인서의 경우 발급에 최대 10일까지 소요</p> <p>사업자등록사실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 가능</p>	
<p>● 법인 등기부등본 1부</p>	<p>법인기업인 경우</p>	
<p>● 공장등록증 1부</p>	<p>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p>	
<p>●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p>	<p>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p>	
<p>● 협약서 [이전예정기업] 1부</p>	<p>관외 소재기업이 협약 후 1개월 내 화성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경우</p>	
<p>● 협약서 [예비창업자] 1부</p>	<p>예비창업자가 협약 후 1개월 내 화성지역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인 경우</p>	

※ 발급서류는 모두 접수일('25.4.7.)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선정규모: 선정 예정 기업의 2배수 범위 내 선정
 - ※ 신청기업이 예비창업 또는 대학생 기업일 경우, 가점부여
 - ※ 「2024년 제2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서류 단계 자동 통과 후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됨.
- 평가방식: 지원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서면평가
- 결과안내: 2025. 5. 21(수) 이내, 화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시’ 및 수원대학교 WoW! Makers 홈페이지 내 서류합격 여부와 발표평가 안내사항 공고

○ 2차 발표평가

- 선정규모: 10개사 최종선정(발표 평가점수 상위 10개사 선정)
- 평가일정: 추후공지
- 평가방식: 최소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발표심사(PT·인터뷰)를 진행
 - ※ 발표는 기업대표가 직접 진행하며, 기업당 총 15분(발표 10분 질의 5분)씩 부여
- 결과안내: 기업 개별 통보 및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공시’ 내 최종 선정결과 공고
 - ※ 위의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평가지표

평가 항목		점수
기술성	· 기술 구체성 여부 · 기술의 구현 적정성 여부 · 기술의 파급성	30
시장성	· 시장진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여부	30
필요성	·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본 사업목적과 신청 제품/기업과의 적합성	20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 의지 및 기술지식 수준 · 창업자의 추진역량	20
서류 가산점	· 예비 창업자 또는 대학생 기업은 1차 서류심사 <u>가산점</u> 부여	(10)
합 계		100

*가산점은 서류평가에만 유효

**서류, 발표 평가지표 동일(가산점 제외)

□ **선정기준**

- (서류평가) 지원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상위배점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기술성 > 시장성 > 필요성 > 창업자의 역량 순 > 기타 해당사항)
- ※ 기 선정된 기업이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업 추가 선발

□ **선정 제외대상**

-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자는 선정 제외

부적격 대상

- 1)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4)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5)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6)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참조5] 창업기업 인정기준
- 7)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근거: [참조6] 창업기업 제재 및 환수사유
- 8)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예비창업자만 해당)

중복수혜 대상

- 1) 24년도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지원받은 자
- 2) 접수일(25.4.1.) 기준 동일 과제로 유사 목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선정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유관기관 간 중복수혜 검토 후 중복해당 시 수혜 불가
- 3)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실패처리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기타공지**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에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025년 화성시 딥테크 시제품 제작지원사업」과 「2025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동시에 선정 시 1개 선택 하여 협약하여야 함(상이한 제품으로 참가하여도 중복수혜 해당)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유사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결과보고서, 사업성과물, 설문조사, 실적제출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 진흥원 및 수원대학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사에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도면은 손 스케치 및 아이디어 제출만으로는 불가
- 최종 확정된 도면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수정 가능)

◆ 문의처

- 수원대학교 WoW! Makers(☎ 031-229-8821, ✉ makerspace@suwon.ac.kr)
 - (재)화성산업진흥원 창업벤처팀(☎ 031-377-6158, ✉ jae@hsbiz.or.kr)
-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관련 문의는 수원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국의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의2. “국의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략-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참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 2. 7.>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4. 8. 27.>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참조 5 / 창업기업 인정 기준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결과 ①업력 기준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②폐업 또는 기타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영 시행(2024.3.15.)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조 6 창업기업 제재조항

제재 및 환수(지급불가)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input type="checkbox"/>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input type="checkbox"/>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input type="checkbox"/>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불인정)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미지급)	개선요청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사업비 사후정산 사업의 경우, 지급 이전 제재사항 발생시 전액환수 사항은 전액 미지급으로 처리하며, 잔액 환수 사항은 제재사항 발생시점 이전 사용금액만 인정됨.
 * 단,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진흥원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참조 7 수원대학교 시제품 제작 장비

번호	자산명	품명/규격	수량
1	3D프린터(보급형)	Maketbot replicator	10
2	3D프린터(산업용)	MJP2500PLUS	1
3	3D프린터(대형)	M400	1
4	레이저마킹기	SFLM-30W	1
5	레이저커팅기	SPEEDY 400	1
6	수직형머시닝센터(MCT 5호기)	VM5400	1
7	수직형머시닝센터(MCT 4호기)	DNM4500	1
8	CNC 3축	TinyCNC-P6060C ATC	1
9	CNC 5축	TinyCNC-P6060C 5AXIS	1
10	고진공 흡착대면적고속가공기	RXR 2450L	1
11	컴퓨터자수기	PR680W	1
12	각도절단기	M18 FMS254-0	1
13	다관절 탭핑머신	VAT-1408	1
14	도미노 패스틀	DF500-Q-PLUS	1
15	밀워키 전동공구	-	1
16	밴드쏘	WS-14 (220V, 2HP)	1
17	벨트샌더기	HS950	1
18	사이클론집진기	CIFLUX 2	1
19	샌드블라스터	로즈비1	2
20	석정반	석정반	2
21	소형사출기	MD-25	1
22	수압대패기	A341A	1
23	스크롤쇼	JWSS-22B	1
24	슬라이딩테이블쏘	K3 WINNER 아웃트리거	1
25	습식그라인터/테이블베이스	-	1
26	실사출력기	HP Latex700W 64inch Prineter	1
27	쏘스탑-루터기-세트	-	1
28	아크릴 절곡기	1200mm 아크릴절곡기	2
29	열프레스기(컵)	2구컵프레스 ST-210	3
30	열프레스기(평판)	조개형380	2
31	용접기	MIG205PRO	1
32	용접부스	-	1
33	자동대패기	PX16	1
34	초소형분쇄기	S-2	1
35	커팅 플로터	CE7000-130	1
36	콘타머신	VS400	1
37	탁상 드릴링 머신	YSTM-19-380V / YSDM-13mm	2
38	테이블쏘	M18 FTS210-0	1
39	툴링함	VM5400	1
40	툴링함	DNM4500	1
41	트리거 클램프셋트	-	1
합계			57